

◇ 이전지역 지역인재 ◇

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(부산)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

- ※ 대학 졸업예정자란 4년(=8학기, 전문대학의 경우 2년=4학기) 이상 등록하고,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,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**입사지원 시점에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**에 한함
- ※ 대학 졸업예정자는 **입사지원서 마감일 이전까지 졸업예정증명서 사전 발급 필수 및 사전 발급 후 '이전지역 인재(졸업 예정)를 선택하실 것**
(반드시 발급 가능여부 사전 확인 필요 및 추후 졸업예정증명서 제출)

*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및 국토교통부 예규 「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」 기준

□ 이전지역(부산) 학교의 범위

- (1)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, 이전지역(부산)에 소재하는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 등의 본교
- (2)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 캠퍼스(이원화 캠퍼스)
 - **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여부는 해당 학교에 확인하실 것**
 -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, 이전지역 인재로 포함되며,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(예정)인 것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
 - 이전지역(부산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이전한 전 지역)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,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이전지역 인재로 포함
- (3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(부산)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(단,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)

- (4) 이전지역(부산)에 소재하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 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
고등기술학교

□ 이전지역(부산) 학교 제외 대상

- (1)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

- 「경찰대학 설치법」에 의한 경찰대학(경기)
- 「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·해·공군사관학교(서울·경남·충북)
- 「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(대전)
- 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(경북)

- (2)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

□ 이전지역(부산) 인재의 범위

- (1) '이전지역(부산) 학교의 범위'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자

- (2) 이전지역 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
졸업예정인 자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자는 해당 학력을 제외한
최종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

- 「고등교육법」,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
- 「고등교육법」에 규정된 사이버대학
- 「평생교육법」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
-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
-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

- (3)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
-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
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지역 인재 제외
-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,
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
하거나 졸업 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지역 인재 제외

□ 이전지역(부산) 인재 해당여부 참고사례

(1) 본교와 분교·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

-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이전지역(부산)에 위치한 경우
: 분교·지방캠퍼스는 이전지역 인재 해당
- 본교가 이전지역(부산)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타 지역에 위치한 경우
: 분교·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인재에 해당

*** (예시)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, 지방캠퍼스인 양산·밀양캠퍼스는 경남에 위치
하므로 본교 학생은 부산, 양산·밀양캠퍼스 학생은 경남 지역인재 해당**

(2) 이전지역 대학과 타 지역 대학 모두 졸업한 경우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: 해당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(예정) : 해당

(3) 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해당
 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- * 단 이전지역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
(4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 대학을 변경한 경우

-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- 이전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
(5)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

-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 -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- * 단 이전지역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
(6)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

-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해당
-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비해당

(7)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 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해당
-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비해당